

CLEAR.
COMPLIANCE.
CAMPAIGN.

MAGAZINE
COMPLIANCE

ISSUE NO.5
WIN-WIN
PARTNERSHIP

NOVEMBER 2022

Inspired by MAGAZINE B

C

WIN-WIN
PARTNERSHIP

SeAH 세아특수강 x 세아메탈

INTRO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을 위한 월간지, 매거진C 11월호

협력회사와 함께 진화하는 길, 상생 협력

안녕하십니까? C/P TF 업무지원팀입니다. 이번 매거진C 주제는 “상생 협력을 위한 공정한 새내하도급 운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협력회사와 함께 특수강과 메탈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혼자는 할 수 없던 일,
함께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핵심화두로 부상하면서 정부 및 기업의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가속화 되고 있는데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이제 이윤추구만을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관계 회사들과도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요.

나눔과 배려, 소통과 공감, 공유와 상생의 키워드가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하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특수강·메탈은 함께의 힘을 위해 모인 협력회사와 보다 건강하게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소통하고 조금씩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양한 회사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며 상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건전한 새내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파견 등의 관계에서는 일을 위탁하는 "원청"과 일을 맡아 완성하는 "하청"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본질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춰 "원사업자"와 "협력업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개념적 정의부터 명확히 해보도록 할게요.

민법 제664조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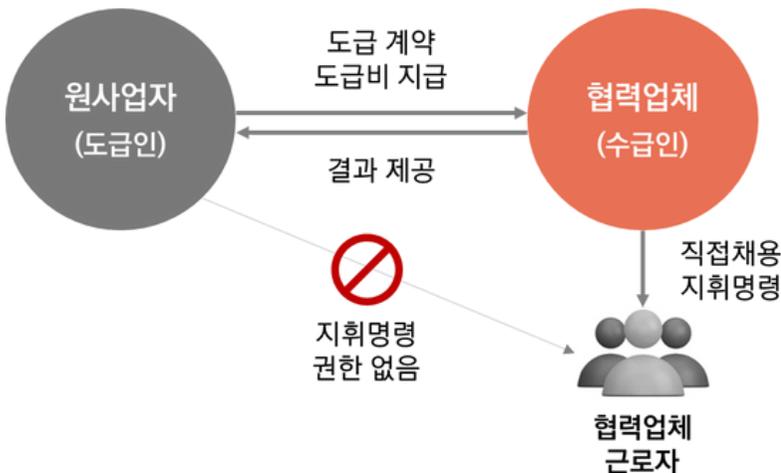
당사자 일방(수급인, 협력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원청)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구조

- 원사업자(도급인) : 업무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
- 협력업체(수급인) : 업무 처리를 위탁 받은 사업주

도급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도급, 용역,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데요. 특히 사내 하도급은 원사업자(도급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협력업체(수급인)가 맡아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업무 완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사업자가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탁하여 협력업체가 업무를 완결하는 구조이지요.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노무 의사결정 및 업무 시 지휘명령은 모두 협력업체의 역할입니다.



도급

비슷하지만 다른 : 파견

정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내용에 따라 원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원사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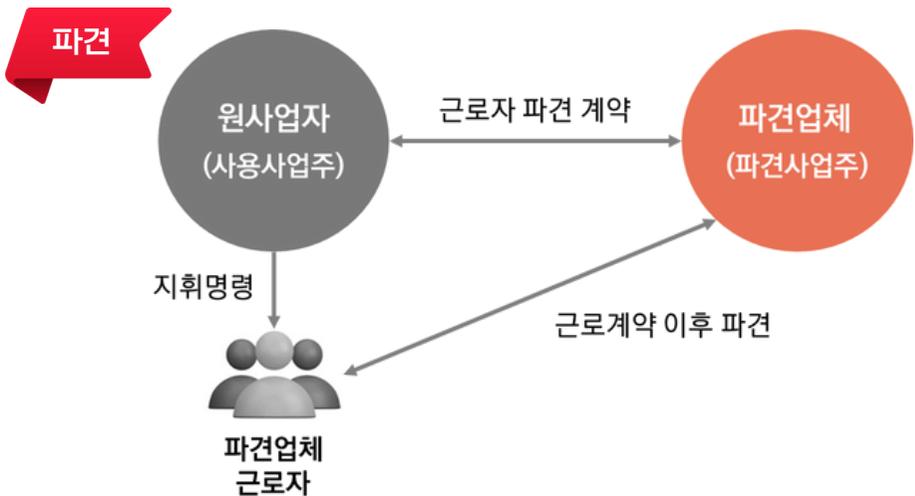
- 사용사업주(원사업자) :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 파견사업주(파견업체) :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파견은 달라요. 파견업체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여 원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직접 원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업무를 합니다. 도급과 파견의 가장 큰 차이는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지**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셀프인테리어를 하는 방법 or 인테리어 업체에 턴키로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셀프인테리어를 할 때 일을 맡기려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직접 섭외합니다. 자재 시장에 가서 견적도 내보고요. 단가 조정도 개별로 진행합니다. 전체 업무흐름, 완공 일정 등을 직접 챙기고, 작업시방서를 확인하고 타일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맞는지 등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시하느라 다른 일은 할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턴키로 맡기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 흐름, 일정, 작업자 등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자와만 소통 하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효율과 더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이 **협력업체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이유**입니다.



* 턴키(Turn-key)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의미

02

협력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우리 경영 환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 복잡성, 모호성

VUCA*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수적인데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시도한 것이 바로 아웃소싱입니다. 즉, 비즈니스의 전략성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자원외부화 전략을 추진한 것이죠.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었는데요.

유연성, 전문성, 효율성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협력회사입니다. 협력회사는 원사업자(세아특수강·세아메탈)와 계약을 맺고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도급 계약"은 **수급자 책임주의에 입각해 협력회사가 알아서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력회사는 우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서 우리 사업과 연관된 전문화된 기업들이 모여 집합체를 형성, **협력을 통해 공진화(共進化)하는 원리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생하기 위한 공진화의 원리를 우리는 지키고 있을까요?

참고자료 : 월간 노동리뷰(19), "대기업의 협력업체 일터혁신 지원 사례"

* VUCA란? 냉전 후 미국이 작전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단어로 Volatile(변동성), Uncertain(불확실성), Complex(복잡성), Ambiguous(모호성) 단어를 조합

개별 서포터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과거에는 협력업체를 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공정 흐름이 멈추지 않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여 "공정(Process) 관리"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개별 서포터처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협력회사를 "전문가 그룹"으로 재정**하기로 했습니다. 협력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해야만 상생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협력업체와 업무 시 흔히 하는 오해

돌발작업이 발생하여 너무 급한 상황이라 현장대리인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에 돌발 작업 처리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협력업체 근로자 중 업무를 개선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한 분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직접 표창·포상금을 드릴 수 있나요?

협력업체 근로자 중 한 분이 업무가 미숙해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력업체에 근로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협력업체 근로자가 업무 중 작업장을 이탈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시말서를 직접 받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파트너십을 위한 진실

아니요. 작업 수행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나 조정 등은 협력회사 대표or관리자 (현장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돌발작업도 협력업체 판단**에 맡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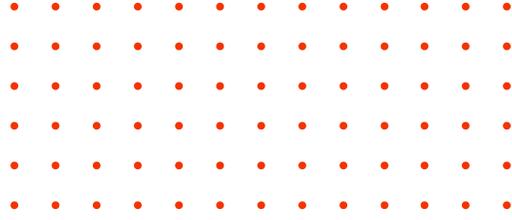
아니요. **협력업체 근로자 개별평가는 협력업체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며,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한 표창or포상은 가능하므로 **전문가 "그룹"으로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원사업자는 협력업체와 "업무 완성"에 대한 도급계약에 의거하기에 **협력업체 직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인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에 정식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니요. 협력업체 특정인을 지목해서 업무 수행부족에 대해 언급하거나,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협력업체의 징계, 인사결정권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에 정식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함께 내는 시너지를 위한
서로의 노력을 살피볼게요!

원사업자의 노력



MUST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역할 【의무】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협력업체와 연대하여 책임**
- 도급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근로자 **인건비 단가는 최저 임금 이상이 되도록 산정**



- 협력업체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BETTER 근로조건 등 개선 위해 노력하면 더 좋은 역할 【권장】

임금

- **도급대금 합리적 결정**, 정당한 지급 시기·방법으로 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X)
- **사회보험료·최저임금 등 변동** 시, 반영 노력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자료요청 가능)
- 원사업자와 원사업자 소속 근로자 대표는 **원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 배려

복지·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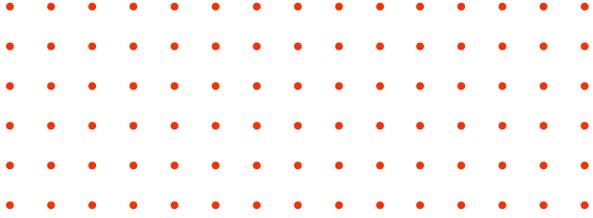
- 협력업체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가입 or 사내 근로복지기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배려 (단,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50% 이상 거래 협력업체 限)
- 원사업자 **복리후생시설 함께 이용**하도록 가능한 범위 편의 제공
- 산업재해 위험 작업은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위험 시 **대피방법 등 협력업체 사업주와 산업안전·보건 조치 사전 협의**

능력개발

- 협력업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협력업체 사업주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교재·기자재·교육장소 등 적절한 편의 제공**
- 필요 시 **협력업체 사업주와 협의하여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공동훈련 실시 가능**

고충처리

- 협력업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원사업자 협조 or 지원 요청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



협력업체의 노력

- 협력업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여 교부,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 미리 서면 통지
-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함
- 사회보험,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 상 의무 이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상의 조치
-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근로자가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 주요사항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 도급대금은 동종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비용 확보 등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 노력
-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도급대금 중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함
- 사회보험료 등 최저임금 변동 시, 해당 변동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 되도록 원사업자와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
-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상된 직업능력을 적정하게 평가, 임금 등 근로 조건 개선과 경력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기자재·교육 장소 등 지원과 편의 제공받도록 노력

-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충제기 접근성 향상 노력, 고충은 신속히 처리
- 고충이 원사업자 or 다른 협력업체 관련 시, 관련사업주와 협의하여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

03

함께 진화하기 위한 5가지 원칙

그레이존(Gray Zone)을 아시나요?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본래는 초강대국의 세력권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 혹은 기업이 추진할 신규 사업이 기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로, 최근에는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분장이 애매한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원사업자와 협력업체의 역할이 모호한 경우 그레이존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진화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고민해 본다면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01 사업경영상 독립성

Q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인사권한** X

Q 협력업체의 **자체인프라** (조직·설비·부품·소모품) X

Q **업무의 전문성** 및 구분성·한정성·기술성 X

02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

Q **업무의 독립성** 및 실질적 편입 여부 X

Q 업무상 **지휘·명령** 주체 X

인사 권한

의미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판단근거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해고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증빙서류 필요
-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서류 등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평가, 보상하는 일련의 인사 권한은 해당 회사의 독자적인 역할인데요. 협력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채용, 배치, 승진, 징계, 해고, 임금 등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가, 조퇴, 교육 등 인사노무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협력업체 사업주의 권한**이기에 이에 대한 언급, 요청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채용 인원 계획, 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체크리스트

※ 체크한 항목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업무 시 유의

- 협력업체에 **인원총원 계획**을 요청 or 보고 받고 있다.
- 협력업체 **채용공고 시 원사업자 로고**가 활용되거나 **명의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 협력업체 **채용 서류심사 or 면접 시 원사업자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 협력업체 **근로자 채용 및 퇴직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 출입등록, 사원증카드 발급 등의 목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정보**가 필요하여 **인사정보 전체**를 요청하여 보관한다.
- 협력업체 직원 **선발 시 일정자격을** 요구한다.
- 협력업체 직원 **업무수행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수시·정기 평가 or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협력업체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협력업체 직원 **해고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
- 협력업체 직원들의 **휴가병가, 시업·종업·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에 관여한다.
- 협력업체 직원이 **결근, 조퇴, 외출** 등을 할 경우 **보고**하도록 한다.
- 협력업체 직원이 **지각, 조퇴, 결근 시** **도급금액**을 감액한다.
-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수행 태도 및 근무실적** 평가에 관여한다.
- 협력업체 직원의 **잘못된 업무수행 시점**을 **대상자에 직접** 요청한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19.12),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 ;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파견법 업무매뉴얼" 및 "새내하도급 적법 운영 진단 체크리스트"

자체 인프라

의미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판단근거

-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기계, 설비, 기자재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
- 무상 제공 시 필요성 및 정당성 확인 (이유, 업무 상 필요여부, 유무상 제공 내역 기재)

자체 인프라란 협력업체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협력업체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 제공 시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체크한 항목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업무 시 유의

-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설비·기자재, 부품 및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기계·설비·기자재에 대한 변상규정이 없다.
-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협력업체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가 사무실 등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1번 문항

근로자채용6극점

다음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에 대한 내용 중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QR코드 촬영하여
정답제출

- ① 원사업자: 협력업체로부터 소속 근로자 채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 ② 원사업자: 협력업체 채용, 퇴직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보관한다.
- ③ 협력업체: 채용 시 원사업자의 회사 로고를 사용하여 많은 지원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④ 원사업자: 협력업체 직원 채용 시 일정 자격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 전문성

- 의미**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해당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 판단근거**
- 기획 관련 서류, 원사업자-협력업체 간 체결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확인
 - 협력업체 사업주 등의 업무수행 능력 및 소속 근로자 자격등 유무 등으로 판단

업무 전문성이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경영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범위·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원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특정한 일의 완성이나 사무의 처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체크한 항목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업무 시 유의

- 협력업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지 않았다.
- 협력업체가 **업무수행 관련 전문적인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하지 않았다.
-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작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신규 근로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정기 교육 등)



2번 문항

근로 10이보 1~8 극급

다음 중 원사업자(도급인)와 협력업체(수급인) 행위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원사업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 직원으로 대체
- ② 원사업자 주관 조회나 교육에 협력업체 직원이 참석
-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을 협력업체 스스로 수립
- ④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력업체에 요구



QR코드 촬영하여
정답제출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 ('19.12) ;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파견법 업무매뉴얼" 및 "새내하도급 적법 운영 진단 체크리스트"

업무 독립성

의미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사업자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원사업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근거

- 원사업자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형태 (하나의 작업 집단인지, 공동 작업인지)
- 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 근로자 결원 발생 시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하도록 하는 경우 등

업무 독립성은 협력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편입 없이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하거나, 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도 수행한다면, 결원 발생 시 대체하도록 하는 등 특수강·메탈 직원과 마찬가지로 활용한다면 이는 원사업자가 협력회사를 종속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협력회사의 사업과 업무의 독립성을 존중**해주세요.

체크리스트

※ 체크한 항목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업무 시 유의

- 도급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다.
- 도급비 정산방식이 물량 도급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임를 계약 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개별급여 결정에 관여한다.
- 협력업체는 도급 계약 체결 시 이해보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 협력업체의 다른 회사 업무 겸업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요구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 평가 시 인력총원, 협력업체 직원 근태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 협력업체가 자체 수립한 소속 직원들의 업무평가가 기준이 없다.
- 협력업체에 대한 명목 없는 정기 혹은 수시 컨설팅을 실시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감사, 진단을 실시한다.
- 협력업체 대표자가 원사업자 경영현황 설명회에 참석한다.
- 하나의 연속흐름 공정 내에 협력업체 작업 부분과 원사업자 작업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 ('19.12) ;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파견법 업무매뉴얼" 및 "사내하도급 적법 운영 진단 체크리스트"

지휘 명령

의미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판단근거

-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등
- 관련 회의자료, 관련 서류 및 관행 등을 확인

수율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돌아가는 현장에서 아무래도 무심코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지시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력 업체 직원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거나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협력업체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필요한 자원 분배와 작업 방식을 결정하고일을 맡긴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 관리인에게 피드백 함으로써 업무가 진전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과업지시서나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고 **반드시 협력업체 관리인을 통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도 "습관"이라는 것이 생기곤 합니다. 그 습관은 쉽게 관성이 되어 하던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뇌는 부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몸에 익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상생을 위해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체크리스트

※ 체크한 항목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업무 시 유의

- 협력업체 직원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결정에 관여한다.
- 협력업체 교대제 운영 여부 결정에 의견을 제시한다.
- 직원 중 산재,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협력업체 직원으로 대체한다.
- 미리 작성한 작업지시서, 작업표준서, 매뉴얼 등을 교부한다.
-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이 독자적인 판단 하기 전에 보고를 요청하며,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휘·명령한다.
- 정기적 or 비정기적 조회, 교육 등에 협력업체 직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 협력업체 조회에 참석한다.
- 협력업체 직원이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혼재되어 근무한다.
- 도급한 업무의 수행과정 중 특정 업무에 대한 합의, 승인을 받도록 요청한다.
- 협력업체 직원의 잘못된 업무수행 시정을 위해 직접 개선을 요청한다.

04

새로운 길
그 변화의 시작

작년 9월 세아특수강 총주공장은 협력업체의 안정적 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TF를 꾸렸습니다. 협력업체-원사업자 모두의 사업 경쟁력 지속과 동반 성장 도모를 위한 TF였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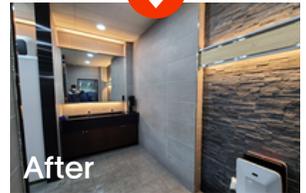
우리가 함께 가는 새로운 길

그 결과 올해 3월, **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현가능한 안건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화장실 및 샤워시설 개선, 식사품질 개선 및 공정룸 리모델링** 등 그동안 열약했던 근무환경에 대한 선제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복지개선을 위한 작은 움직임을 지속해 보자는데 뜻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아특수강·세아메탈의 상생 시너지를 위해 **협력업체를 "전문가그룹"으로서 존중하고 지원하며 함께 하는 변화를 지속했으면 합니다.**



Before



After



3번 문항

근로 노이아프지 극극로

다음 중 원사업자(도급인)와 협력업체(수급인) 행위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2개)

- ① 협력업체: 계약된 도급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 ② 원사업자: 협력회사에 대한 경영감사 및 진단을 수시로 진행하여 협력회사가 회사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③ 협력업체: 임를 계약 시, 직원 급여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 경영설명회를 실시하여, 협력업체가 회사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R코드 촬영하여
정답제출

더 건강한 상생협력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향상 WoW

Way of Working (일하는 방식)

- 01 협력업체는 우리의 **하부조직이 아닌, 전문가 그룹입니다.** 존중하는 만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 협력업체는 **회사 대 회사 독립적 주체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과를 내는 파트너 관계로 대해 주세요.
- 03 "근무시간"이 아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계약입니다. 근무방식, 근무시간이 아닌 업무 완결성, 품질로 소통해주세요.
- 04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는 협력업체 대표자의 권한입니다. 패싱은 그 누구도 받기지 않아요.
- 05 **무전, 카톡, 전화, 문자 모두 소통**이 아니라 **침해**입니다. 협력회사 직원에 직접 지시하고 싶은 마음, 고이 넣어주세요.
- 06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너의 일이나 잘 하라고.
- 07 사업장 내 모든 이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근무할 권리 서로 지켜주세요.
- 08 **모든 정보는 한 곳(협력업체 관리자)**으로 보내주세요. 협력업체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09 **개인의 사소한 행동**이 모여 큰 영향을 줍니다. 경험이 쌓여 문화가 됩니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을 전환해주세요!

15

CLEAR COMPLIANCE CAMPAIGN

매거진 C

제 5 호	2022년 11월호
발간일	2022년 11월 25일
발행처	세아특수강 C/P TF
주 소	서울 마포구 양화로45 세아타워 24층
문 의	+82.2.6970.0216
